

심사보고서

【남양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】

의안 번호	703
----------	-----

2022. 4. 25.
운영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2. 4. 13. / 김진희 의원 등 6명
- 나. 회부일자 : 2022. 4. 15.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2. 4. 25.

2. 제안설명 요지

-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
 - 상임위원회 증설과 위원정수 및 소관 업무를 조정함(안 제2조 및 제3조)
현재(3개 위원회): 운영·자치행정·산업건설위원회 →
개정(4개 위원회): 운영·자치행정·복지환경·도시교통위원회
- 남양주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
 - 후생복지운영협의회 구성원 변경(안 제9조)
현재: 운영·자치행정·산업건설전문위원 →
개정: 운영·자치행정·복지환경·도시교통전문위원
- 남양주시의회 공인조례
 - 직인의 종류 변경(안 제2조)
현재: 운영·자치행정·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→
개정: 운영·자치행정·복지환경·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

○ 남양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

- 의정자문위원회 당연직 위원 변경(안 제4조)

현재: 자치행정·산업건설위원장 →

개정: 자치행정·복지환경·도시교통위원장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김학철)

- 본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증설을 위해 「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」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집행부 조직의 확대와 지속적인 도시발전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업무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 심도 있는 심사와 위원회별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,
- 다만, 개정안 내용과 관련하여 소관부서 조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제 9대 의회에서 집행부의 조직개편 등 향후 추이에 따라 필요시 보완토록 하고, 이번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증설에 중점을 두고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- 아울러, 「남양주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」, 「남양주시의회 공인 조례」, 「남양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은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라 변경된 명칭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·답변 요지

-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

- 없음

6. 심사결과

- 「수정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 음

붙임 : 남양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수정안 1부.

남양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수정안

의안 번호	703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2년 4월 25일

제안자 : 운영위원장

1. 수정이유

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와부읍 등 7개 읍·동의 복지지원
과에 속하는 사항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으로 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가. 안 제1조(「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」의 개정) 제3조제2항제2호라
목 중 “제4호마목”을 “제3호마목과 제4호마목”으로 수정하고 같은
항 제3호마목 및 바목을 각각 바목 및 사목으로 하며, 같은 호에 마
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마. 와부읍·진접읍·화도읍·진건읍·호평동·다산1동·별내동의 복지
지원과에 속하는 사항

나. 수정한 부분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한다.

남양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수정안

남양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1조(「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」의 개정) 제3조제2항제2호라목 중 “제4호마목”을 “제3호마목과 제4호마목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마목 및 바목을 각각 바목 및 사목으로 하며,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마. 와부읍·진접읍·화도읍·진건읍·호평동·다산1동·별내동의 복지지원과에 속하는 사항

신 · 구조문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<p>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자치행정위원회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~ 다. (생 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라. 평생학습원, 대외협력사무소, 읍(출장소를 포함한다)·면·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 (<u>제4호</u>마목의 사항은 제외한다)</p> <p>3. 복지환경위원회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~ 라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마.·바. (생 략)</p> <p>4. (생 략)</p>	<p>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)</p> <p>① (원안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.</p> <p>1. (원안과 같음)</p> <p>2. 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~ 다. (원안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라. ----- ----- 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제3호</u>마목과 <u>제4호</u>마목----- -</p> <p>3. 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~ 라. (원안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마. <u>와부읍·진접읍·화도읍·진건읍·호평동·다산1동·별내동의 복지지원과에 속하는 사항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바.·사. (원안 마목 및 바목과 같음)</p> <p>4. (원안과 같음)</p>